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0
----------	------

2023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16. 김원중 의원(고광민 의원 등 16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3. 10. 23.

다. 상정 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3년 12월 21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년 2월 17일 시행예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조제1항)
- 선정대표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시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에 청구권 확인
사무와 교육·홍보·지원 등의 사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 12조)
-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26. ~ 2023. 10. 30.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조제1항)

- 안 제2조제1항은 기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뿐 아니라 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에 대한 홍보·교육 사항을 추가한바, 이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규정한 법 제3조제3항의 신설¹⁾에 따른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 ----- ----- ----- ----- -----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 -----.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 동 개정안은 주민의 주민조례청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등에 대한 홍보·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2 선정대표자의 지정 근거 신설 및 규정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4조제1항은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대표자 증명서(이하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u>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u>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 ----- ----- <u>한다</u>)- ----- -.

- 현행 조례상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에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절차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법 제6조제1항²⁾에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청구서와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첨부하라고 기재

홍보하여야 한다.

-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하고 있으며 따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 제4조제2항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복수(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수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의장이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할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1명으로 정하는 경우 오히려 주민조례청구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고 서명 등을 하는데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대표자 선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나치게 다수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절차의 간편화를 도모하려는 대표자 선정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 이내로 대표자의 수를 제한하는 등 개정안은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2022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와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서명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필요하다면 주민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의 대표자를 2명 이상 다수의 사람으로 선정하여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에 있어 선정대표자를 인정하고 있음.

3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신청 신설(안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대표자가 의장에게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를 대표자가 되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한편, 법에는 대표자가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거나 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법에는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요건에 대한 수리 및 각하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반려 조치의 근거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동 개정안이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신청의 기한을 두면서도, 구체적으로 철회 신청의 요건이나 사유, 철회의 효과 및 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대표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자칫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③ <u>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u>

- 또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따라, 당초 주민조례청구에 참여한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 훼손 가능성과 철회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공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바, 추후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제2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3)에 따라 대표자의 청구인명부 제출방식 등을 규정하여 청구인 명부 관리에 편의를 제공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청구인명부) ② 대표자는 청부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법 제9조 4항은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청구인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는 읍·면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불일치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과 명칭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의견>

-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청구인명부 작성 등)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7조(청구인명부)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 ②_-- ----- <u>자치구 동별로</u> ----- ----- ----- -----

5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한 통지 및 처리기한 신설(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2 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⁴⁾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한 경우에 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부적합하면 각하하면서,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u>합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u> <u>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u> <u>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u>
--	--

- 안 제11조의2 제2항은 법 제12조제2항⁵⁾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기간을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로,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과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	-----

- 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 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② <u>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u>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u> <u>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u> <u>한다.</u>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u> <u>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u> <u>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u> <u>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u> <u>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u>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u>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u> <u>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u> <u>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u> <u>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u> <u>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u> <u>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u> <u>날)부터 3개월 이내</u>
--------------------	---

- 동 개정안은 법의 규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여부 결정 기한의 상한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 안 제11조의2 제3항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6)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안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수가 조례에 규정된 서명수(25,000명 이상)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고, 유효한 서명이 조례에 규정된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의 형식적 요건의 하나인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필요 이상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조례청구 절차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호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안 제11조의2 제6항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는 법 제12조제4항⁷⁾ 내용을 반영한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 안 제12조는 법 제14조⁸⁾에 따라 시장에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서명 무효 결정 검토 사무에 대하여만 협조요청 할 수 있던 것에 더하여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하는 사무와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 사무도 추가 규정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12조 제4호의 교육·홍보 등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에서, 안 제12조 제4호 중 “제12조” 부분은 시장에 대한 사항으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u>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u>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 <u>주민조례발안 관련</u> ----- ----- ----- ----- ----- -----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무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u>확인 사무</u>
<u>1. · 2.</u> (생략)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신설></u>	<u>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u>

7

기타 개정 사항(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은 조문 신설 및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 순서 조정, 띄어쓰기 수정등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개정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u>대표자 증명서</u> 는 <u>별지 제2호서식</u> 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u>의장</u> ----- ----- ----- <u>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u> -----.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대표자 증명서</u>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u>대표자증명서</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3호서식</u> 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 ----- <u>별지 제5호서식</u> -----

임신고증은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6호서식</u>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u>별지 제6호서식</u>----- ----- 제7조(청구인명부) ① ----- ----- <u>별지 제7호서식</u>----- ----- 제10조(이의신청) ① ----- ----- ----- <u>별지 제8호서식</u>----- -----
---	---

- 다만, 별지 제7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명칭이 혼용 사용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에 맞게 서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2180-7683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80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21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여 청구인명부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일부 경미한 오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함(안 제7조제2항)
- 법령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함(안 제12조제4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청부인명부”를 “청구인명부”로, “읍·면·동”을 “자치구 동”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 ○ ○ 자치구 ○ ○ 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 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 ----- -----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 -----.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u>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 의장-----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u>대표자 증명서</u>는 <u>별지 제2호서식</u>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대표자 증명서</u>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 ----- - <u>대표자증명서</u>는 <u>별지 제3호서식</u>-----. ② ----- ----- <u>대표자증명서</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u>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u>	②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 법 제7조제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 (개정안과

현행	개정안	수정안
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3호서식</u> 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u>별지 제4호서식</u> 에 따른다.	----- ----- <u>별지 제5호서식</u> ----- ----- ---- <u>별지 제6호서식</u> ----- -----.	같음)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u>별지 제5호서식</u> 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청구인명부) ① -- ----- - <u>별지 제7호서식</u> ----- -----. ② <u>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제7조(청구인명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u>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u> ----- ----- ----- -----.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6호서식</u> 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제10조(이의신청) ① --- ----- ----- ----- <u>별지 제8호서식</u> ----- ----- -----. ②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제10조(이의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 ⑥</u>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 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 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 다.</u> <u>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 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 는 경우</u> <u>2. 법 제11조제2항에 따 라 제기된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 우</u>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 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유무호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 여야 한다.</u>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제12조(사무협조) -----			제12조(사무협조) (개정		
<u>법 제14조에 따라 청구</u>		<u>주민조례발안 관련</u> ----			안과 같음)		
<u>인명부의 서명 확인</u> 사		-----					
무를 원활하게 수행하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무에		-----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					
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u><신 설></u>		<u>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u>			1. (개정안과 같음)		
		<u>청구권자 확인 사무</u>					
1. · 2. (생 략)		<u>2. · 3. (현행 제1호 및</u>			(개정안과 같음)		
		<u>제2호와 같음)</u>					
<u><신 설></u>		<u>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u>			<u>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u>		
		<u>따른 교육·홍보·지원 등</u>			<u>육·홍보·지원 등 사무</u>		
		<u>사무</u>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 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 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을 “주민조례발안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 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② (생략)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 ----- ----- 한다)----- ----- -----.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u><신 설></u>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u>대표자 증명서</u>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 <u>의장</u>----- ----- ----- <u>대표자증명서는</u> <u>별지 제3호서식</u>-----.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대표자 증명서</u> 발급 사실을 공표	② ----- <u>대표자증명서</u> -----

현행	개정안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 -----. 1. ~ 4. (현행과 같음) 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u>별지 제6호서식</u>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① ----- ----- <u>별지 제7호서식</u>----- -----.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6호서식</u>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u><신 설></u>	<u>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제10조(이의신청) ① ----- ----- ----- <u>별지 제8호서식</u>----- -----. ②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u> <u>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u>

현행	개정안
	<u>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u> <u>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u> <u>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u> <u>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u>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u> <u>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u> <u>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u>

현행	개정안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u>법 제14조</u> <u>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u>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 <u>주민조례발</u> <u>안 관련</u> ----- ----- ----- ----- -. ----- ----- -----.
<u><신 설></u> 1.·2. (생략) <u><신 설></u>	1. <u>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u> <u>확인 사무</u>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 음) 4. <u>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u> <u>등 사무</u>